

1. 개정이유

현재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주된증상, 사망여부 및 상해경증 등의 정보를 의료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,

다수 사상 사고 등 재난 현장에서 이송된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장에게 이송 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여 이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성명, 연락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(안 제18조의3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3(응급환자 정보 파악)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응급환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환자명
2. 연락처
3. 주 소
4.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환자
5. 기타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8조의3(응급환자 정보 파악)</u> <u>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</u> <u>한 경우 응급환자의 위치를 파</u> <u>악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의2제1</u> <u>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</u> <u>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</u> <u>할 수 있다.</u> <u>1. 환자명</u> <u>2. 연락처</u> <u>3. 주 소</u> <u>4.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된</u> <u>환자</u> <u>5. 기타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</u> <u>악할 수 있는 정보</u>